

2023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 기존의 '글로벌 IP스타기업육성사업'이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 운영됩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22년 선정된 연차평가 통과 기업의 경우 동일 내용으로 지속 지원됩니다.)

01 사업목적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수출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02 신청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

03 접수기간

2023. 1. 6.(금) 공고 ~ 2023. 2. 15(수) 18:00

04 신청 및 지원 절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05 지원내용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비용지원,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개발(제품·포장·화상), 디자인 목업, 브랜드개발(신규·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06 기업분담금

기업분담 40%[현금 20%+현물 20% (해외권리화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현물 10%)]

* 과업규모 및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현금)률이 상향될 수 있음

07 기 타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의하여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IP스타 졸업기업도 신청 및 지원 가능함 (단, 졸업년도로부터 2년 이상된 기업)
예) 2020년 졸업(최종지원연도) - (2021년, 2022년 휴지기) → 2023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하며,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필요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연차평가 '미흡' 평가기업 및 선정이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년차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내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 선정 이후 과제 미신청 및 미선정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반영 및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08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경로 ▾

RIPC 온라인 사업신청(www.ripc.org/pms) → 해당 센터 선택 →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 가점 사항 확인(증빙 제출 필요)

09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i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구분	센터명	연락처	구분	센터명	연락처
1	서울센터	02-2222-3860	10	울산센터	052-228-3086
2	경기센터	031-500-3066~3068	11	대구센터	053-222-3148
3	인천센터	032-810-2877	12	경북센터	054-274-5533
4	강원센터	033-769-2612	13	경남센터	055-210-3088~3089
5	충남센터	041-559-5743	14	전남센터	061-242-8587
6	대전센터	042-933-7813	15	광주센터	062-604-9241
7	충북센터	043-229-2733	16	전북센터	063-252-9301
8	세종센터	044-998-1000	17	제주센터	064-755-2555
9	부산센터	051-714-6761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 지역 센터로 신청 및 문의

세부지원과제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분담금 제외금액)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 (개별국)	유럽	5,700천원 이내	
		일본	4,000천원 이내	
		미국	3,900천원 이내	
		중국	3,5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0천원 이내	
	상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해외출원 OA, 등록 지원	OA 비용	미국·중국·유럽	1,900천원 이내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의 중간대응(OA비용),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일본	1,4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1,000천원 이내	
	등록 비용	유럽	3,000천원 이내	
		미국	2,100천원 이내	
		중국·일본·동남아/기타	1,600천원 이내	
특허	특허맵(심화)	18,000천원 이내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8,000천원 이내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18,000천원 이내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27,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기타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33,000천원 이내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24,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목업 등 융합개발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13,000천원 이내	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 진단,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의 경우, 향후 과업 재설계 등을 통해 단가 조정될 수 있음)

선정우대사항

구분	가점 (최대 부여 가점 : 4점)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 기업	2점
(산업부/특허청)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보유기업	2점
(특허청) 지식재산공제가입기업	2점
(특허청)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2점
(조달청)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2점) [종류] 1.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패스트트랙) 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패스트트랙II) 3. 그밖에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패스트트랙III) 예)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등	2점
(조달청) G-PASS기업	2점
(중기부) 브랜드K기업	2점
(산업부) 해외진출복귀기업	2점
지역특화(주력)산업 기업	2점
소재·부품·장비 기업	2점

가점 증빙 확인 서류



브랜드K기업 인증서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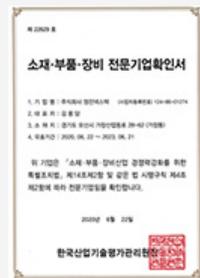
G-PASS기업 지정서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혁신특허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 공문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

-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 : 혁신제품지정인증서 증빙 제출
-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증빙 제출
- ※ (산업부/특허청)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증(특허등록번호) 등 증빙 제출
- * 소재·부품·장비 기업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시행규칙에 기재된 소·부·장 인정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0차기준)가 기업신용정보서비스(키스라인, 크레탐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가점 인정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현황

